

대전광역시교육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제8호 ◀

■ 공통 업무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비고(관련법)
비밀정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통계업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
보안업무	○ 보안업무 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 암호자재 현황,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취급인가 관련 정보	제1호 제2호	보안업무규정 제23~25조
국가안보	○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민원	○ 민원내용, 민원인, 민원내용에 포함된 특정인 개인 정보(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상담 민원기록부 등)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각종 신고 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본인과 관련되어 제기된 진정서 내용 (중앙행정심판위 05-05)	제1호 제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연구용역	○ 각종 연구용역 등 중간 성과물	제3호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비고(관련법)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회의 발언자 인적 사항(자신의 발언내용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수원지법 2008.11.3.2008구합6364) 	제5호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관련 정보 	제5호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평가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성상 사전 공개할 경우 평가목적 실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제5호	
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결과(대구지법 2006구합820) 	제5호	
개인정보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진단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제6호	
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창대장, 공적조서 등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제6호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청구자의 개인정보 	제6호	

■ 감사관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비고(관련법)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감사업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 ○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 자료 ○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1호 제4호 제7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감사·감찰	○ 불시 감사·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민원조사	○ 위법·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제3호	
수사관련 정보	○ 수사의뢰 협조 관련 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등	제4호	
법률위반 공무원 조사 및 처리	○ 법률위반 처분 공무원 명단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제3호 제4호	
공무원 범죄처리결과	○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제6호	
공직기강	○ 공직복무 점검 계획	제5호	

■ 기획예산과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비고(관련법)
시도교육청 평가	○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진행과정에 있는 문서 (평가계획서, 평가보고서, 평가관련 증빙서 등)	제5호	
성과관리	○ 성과관리 점수, 순위 등 개인별 평가 결과 및 평가점수 현황	제5호 제6호	
조직 및 정원 관리	○ 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 (확정 후 공개 가능)	제5호	
재정투자 심사	○ 투자심사자료, 실무심사위원회·투자심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심사조서 등	제5호 제6호	

■ 혁신정책과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비고(관련법)
정보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안 관련 사항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세부 현황 자료 (시스템 정보, 망구성도, IP주소 현황 자료 등) ○ 정보화사업 산출물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 점검 관련 자료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자료 	제2호	
시도교육감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 자료 	제5호	
마을교육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사, 마을학교 운영자, 참여학생 개인 정보 	제6호	

■ 교육복지안전과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비고(관련법)
학원·지도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학원의 행정처분 내역, 위반유형 등 (단, 통계목적의 위반학원수, 위반유형 등은 공개 가능) 	제7호	
지도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시 지도점검·조사·단속 계획 등 정보로 공개될 경우 점검 등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비영리법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공익)법인 임원 개인정보, 비영리법인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3자의 개인정보 ○ 비영리(공익)법인 인허가 문서,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제7호	
저소득층자녀 지원(학비, 정보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제6호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직원 개인정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취득한 제3자의 개인정보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승인 문서,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제7호	

■ 교육정책과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비고(관련법)
교원 단체교섭	○ 교직원 단체(교총, 노조)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력 저하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에듀힐링센터 상담운영	○ 에듀힐링센터 상담 대상자(교직원, 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	제6호	
교육활동보호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내용과 결과에 관한 정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보고서 등)	제6호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의 실시와 결과에 관한 정보	제6호	
교육활동보호 상담	○ 교육활동 피해교원 심리상담 및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내용 등에 관한 정보	제6호	교육기본법 제23조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 유·초등교육과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비고(관련법)
시험	○ 교원의 임용시험, 자격시험,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지, 시험출제관리, 시험출제위원 명단, 시험관리관 선정, 면접위원 명단 등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인사관리	○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 명부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련 정보 ○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 인사교류 등 내부 검토·협의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 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 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교육공무원 상훈 관리	○ 훈·포장 추천자 명단(추천자 관련 주민번호 등) 정부 포상 추천 대상자 범죄 및 수사경력,	제6호	

	형벌사항 여부 조회, 포상추천자 중 결격자 및 보류자 명단 등		
퇴직	○명예퇴직 신청서 및 심사자료, 명예퇴직수당 개인별 지급 내역	제6호	
교원 연수	○각종 연수 이수 성적	제6호	
유치원 평가	○유치원 평가 관련 심사, 선정, 순위 등	제5호	

■ **중등교육과**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비고(관련법)
학교생활 기록 관리	○ 학생생활기록부 정보	제6호	
시험	○ 교원의 임용시험, 자격시험,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지, 시험출제관리, 시험출제위원 명단, 시험관리관 선정, 면접위원 명단 등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인사관리	○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 명부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련 정보 ○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 인사교류 등 내부 검토·협의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 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교육공무원 상훈관리	○ 훈·포장 추천자 명단(추천자 관련 주민번호 등) 정부 포상 추천 대상자 범죄 및 수사경력, 형벌사항 여부 조회, 포상 추천자 중 결격자 및 보류자 명단 등	제5호	
퇴직	○ 명예퇴직 신청서 및 심사자료, 명예퇴직수당 개인별 지급 내역	제6호	
교원 연수	○ 각종 연수 이수 성적	제6호	
교원 자격증 발급	○ 자격증 발급자 개인정보 ○ 자격증 발급 신청자 개인정보	제6호	
징계	○ 징계위원회의 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등	제1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체육예술건강과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비고(관련법)
감염병 예방 관리	○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 중 알게 된 비밀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난치병 학생 관리	○ 난치병 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	
교육환경보호 구역 관리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호	
체육교육	○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개인정보 ○ 체육특기자 신청자 개인정보 ○ 학교운동부지도자 성과상여금,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및 해임, 급여관련서류	제6호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 규정 제2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3조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예능교육	○ 각종 예능대회 참가자 개인정보	제6호	

■ 민주시민교육과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비고(관련법)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 (제한적 공개)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요청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제한적 공개)
성폭력 예방	○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Wee 프로젝트	○ Wee 프로젝트 상담 대상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제6호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총무과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비고(관련법)
공직자 병역	○ 병역사항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관련 서류	제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을지연습	○ 을지연습 관련 문서(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보고서 등)	제2호	
총무계획	○ 총무계획 관련 문서(계획수립 및 관리운영 등)	제2호	
직장민방위대 운영	○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제2호	
직장예비군 운영	○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한 정보 ○ 예비군교육 관련 문서	제2호	
청사방호 관련 정보	○ 청사 설계도 등에 관한 사항 ○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 경비일지, 순찰일지, 순찰경로 등 경비에 관한 사항 ○ 범죄 예방을 위한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 시스템 ○ 범죄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에 관한 정보	제3호 제4호	
인사관리	○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 후보자명부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련 정보 ○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 인사교류 등 내부 검토·협의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 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5호 제6호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비고(관련법)
징계	○ 징계위원회의 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등	제1호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시험	○ 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시험,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지, 시험출제관리, 시험출제위원 명단, 시험관리관 선정, 면접위원 명단 등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 현재 진행중인 시험(일반직 임용)에 관한 정보 (중간 석차 등)	제5호	
단체교섭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력 저하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 담당부서: 행정과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비고(관련법)
소송업무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	제1호	형사소송법 제47조
교육행정심판 업무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발언내용, 회의록 및 심리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행정·민사 소송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 재검토	제4호	
자치법규 개정	○ 자치법규 개정 이전의 개정안 및 검토의견 자료 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 법령안 제외	제5호	
교육공무직원 채용	○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지, 시험출제관리, 시험출제위원 명단, 시험관리관 선정, 면접위원 명단 등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제5호	
교육공무직원 관리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에 포함된 근로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내역 등) ○ 교육공무직원 채용, 근무성적평정, 전보 등 내부 검토·협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전보내신서, 징계 심의·의결·결정 통지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교육공무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단, 특정 근로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학교설립	○ 학교시설결정, 신설학교 신축 및 개축 시 건축승인 전·후 관련 정보	제8호	

도시계획 시설결정	○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제8호	
학교군·학구 관리	○ 학교군·학구 개편 시 TF 명단, 협의자료 등	제5호 제6호	

■ 담당부서: 재정과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비고(관련법)
입찰계약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과정 중 제출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제5호	
급여압류	○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제6호	
시설공사 등 각종계약 업무	○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법인관리	○ 학교법인의 인·허가 문서,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관련 자료	제7호 제8호	
공유재산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 관련 자료, 학교부지 매수 계약서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교육금고관리	○ 금고지정 계획서, 신청서 및 심의자료 등 금고 지정에 관한 정보	제5호 제7호	
채권관리	○ 채무자 재산조회, 압류, 경매 등 채권관리에 관한 정보	제6호	

■ 담당부서: 시설과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비고(관련법)
교육시설 관리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제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설계·감리	○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제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공사·용역	○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제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BTL사업	○ BTL 실시협약 내용, BTL을 수행하는 민간 업체의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생산기술, 내부관리 또는 영업상의 비밀	제7호	

※ 본 기준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단위의 업무 위주로 제정되어 각급 기관(학교, 직속기관 등)에서 수행하지 않는 업무인 경우 해당 정보가 부존재할 수 있음.

< 참고 >

조항	내용	관련 사항 및 정보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p>	<p>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p>	<p>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p>	<p>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관계 조회사항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에 대한 도면도 등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중간 연구 성과 등에 관한 문서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p>	<p>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조항	내용	관련 사항 및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시험 관련 정보 ·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입찰 관련 정보 ·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인사 관련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 처벌이 되는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 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지위에 직접적 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